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ㆍ
목적

다 협력업체 등록 취소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심의
협력업체 등록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
협력업체 미선정 신규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 신청 건 등
필요시 관련 협력업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익명성이